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3. 9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8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8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(2003. 9. 1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 관 재

가. 제안이유
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·시행으로 의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월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,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·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상근하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에 따라 여기에 맞게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여 규정함. (안 제2조 관련)
-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각각 월300,000원씩 인상하여 규정함. (제2조 관련 안 별표1 및 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 조례안은 2003. 1. 2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에 규정된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가 개정·시행되고 2003. 6.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(일반직의사 3명:보건소장, 지역보건과장, 의약과장, 전임계약직 의사 6명:가급 5명, 나급 1명) 9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인상하여 2003. 7.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3조에 규정된 방법수당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의사가 몇 명인가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일반직 의사 3명 및 계약직 의사 6명임.
-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10월부터 지급하는가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7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함.
-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장) : 과장은 의사가 하여야 하나?
- 답변요지(이관재 총무과장) : 소장은 의사자격증이 필요하나 과장은 보건직도 가능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2003. 08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·시행으로 의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 월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,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·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가.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상근하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에 따라 여기에 맞게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여 규정함.(안 제2조 관련)

나.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각각 월300,000원씩 인상하여 규정함.(제2조 관련 안 별표 1 및 별표2)

3. 개정근거

- (1)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(2003.1.20 대통령령 제17894호) 제14조
- (2)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(2002.12.31 대통령령 제17863호) 제2조
- (3) 서울특별시 인사 12540-2102(2003.06.23)호로 의료업무등 수당 인상안 통보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함

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.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3.8.18)
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중 “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”를 “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2조 관련, 별표1 “일반직 의사의 의료업수당 지급 구분표” 및 별표2 “전임 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”를 별지와 같이 각각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〔별표1〕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구 분	전문의	일반의
4급	월909,000원	월854,000원
5급	월909,000원	월818,000원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하고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〔별표2〕

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
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
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
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
2년 미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-----</p>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: [별표2]의 지급구분표</p>	<p>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: -----</p>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방법수당)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한다.</p>	<p>(삭 제)</p>																		
<p>(별표1)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전 문 의</th> <th>일 반 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급</td> <td>월 609,000원</td> <td>월 554,000원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월 609,000원</td> <td>월 518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 의사, 한 의사로 한다.</p>	구분	전 문 의	일 반 의	4급	월 609,000원	월 554,000원	5급	월 609,000원	월 518,000원	<p>(별표1)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전 문 의</th> <th>일 반 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 급</td> <td>월 909,000원</td> <td>월 854,000원</td> </tr> <tr> <td>5 급</td> <td>월 909,000원</td> <td>월 818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----- 보건복지부장관-----</p>	구분	전 문 의	일 반 의	4 급	월 909,000원	월 854,000원	5 급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구분	전 문 의	일 반 의																	
4급	월 609,000원	월 554,000원																	
5급	월 609,000원	월 518,000원																	
구분	전 문 의	일 반 의																	
4 급	월 909,000원	월 854,000원																	
5 급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														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2] <u>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</u> 지급 구분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등급별 근무연수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가 급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나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년 이상</td> <td>월 1,012,000원</td> <td>월 673,000원</td> </tr> <tr> <td>4년 이상</td> <td>월 1,006,000원</td> <td>월 667,000원</td> </tr> <tr> <td>3년 이상</td> <td>월 1,000,000원</td> <td>월 661,000원</td> </tr> <tr> <td>2년 이상</td> <td>월 995,000원</td> <td>월 656,000원</td> </tr> <tr> <td>2년 미만</td> <td>월 989,000원</td> <td>월 65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</p>	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5년 이상	월 1,012,000원	월 673,000원	4년 이상	월 1,006,000원	월 667,000원	3년 이상	월 1,000,000원	월 661,000원	2년 이상	월 995,000원	월 656,000원	2년 미만	월 989,000원	월 650,000원	<p>[별표2] <u>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</u> 지급 구분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등급별 근무연수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가 급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나 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년 이상</td> <td>월 1,312,000원</td> <td>월 973,000원</td> </tr> <tr> <td>4년 이상</td> <td>월 1,306,000원</td> <td>월 967,000원</td> </tr> <tr> <td>3년 이상</td> <td>월 1,300,000원</td> <td>월 961,000원</td> </tr> <tr> <td>2년 이상</td> <td>월 1,295,000원</td> <td>월 956,000원</td> </tr> <tr> <td>2년 미만</td> <td>월 1,289,000원</td> <td>월 95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----- -----</p>	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	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	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	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	2년 미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	월 1,012,000원	월 673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 이상	월 1,006,000원	월 667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 이상	월 1,000,000원	월 66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이상	월 995,000원	월 65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미만	월 989,000원	월 6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	월 1,312,000원	월 973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 이상	월 1,306,000원	월 967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 이상	월 1,300,000원	월 96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이상	월 1,295,000원	월 95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미만	월 1,289,000원	월 9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